

연구 노트

중국의 농업투자환경 분석

법적·제도적인 면에서

정 정 길*

1. 서론
2. 중국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3. 중국의 외자유치제도
4. 투자환경 분야별 현황
5. 투자관련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유의사항
6. 요약 및 결론

1. 서론

우리 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평균 경지면적도 협소하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자급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998년 기준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 30%에 불과하며 이것마저도 점차 하락하여 2004년에는 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통일 후에는 한반도의 식량공급이 더욱 곤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식량을 국내에서 충

분히 생산 공급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증산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는 국내에서의 발전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자들은 투자시작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을 떠올리며 사업을 추진하게 마련이다. 해외투자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누릴 수 없는 좋은 기회들을 향유할 수도 있으나 따르는 위험 또한 그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실행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있어야만 성공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특히 해당 분야의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농업투자환경에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면서 성패의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법률과 제도 요소라 하겠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양호하다 하더라도 외국투자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 더 이상 고려할 가치조차 없을

* 책임연구원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적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그 역사도 일천하여 사회 전반의 체계가 미비하므로 중국에서의 농업투자는 특히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업투자과 관련한 중국의 각 부문별 법률과 제도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며, 중국투자를 계획·추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 정부나 민간이 현지의 법규와 제도 파악 미비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중국농업투자상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단 농업투자도 법과 제도부문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이 일반 공상업 투자와 거의 동일하므로 본문에서는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건으로는 1995년 9월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9·5’계획 및 2010년 장기목표 제정에 관한 건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건의는 산업정책과 관련한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산업구조를 합리화되 1차산업의 강화에 치중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를 육성 발전시켜 전국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함이다. 특히 이 문건은 농업기초가 취약하여 계속 증가하는 농산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업발전을 ‘9·5’계획의 중점 지도방침의 하나로 삼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법으로 경작지를 보호하고 농업에 유익한 황무지를 개간하며 경지이용률을 높이고 식량 과중면적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농지 수리 시설 등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개면적을 증가시키고 절수관개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며 기후에 관계없이 풍작을 이룰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농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농업종합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중저산(中低産) 농지의 개조를 가속화하고 또한 일부 중산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정하여 중점적인 투입을 통해 안정된 식량생산기지로 건설한다는 것이며, 넷째는 과학교육으로 농업을 일으킨다는 정신을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며 효율이 높은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종자공정(種子工程)’에 역점을 두고 우량품종 육성, 도입 및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농업지원 관련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화학비료 공장들을 중점적으로 건설·개조하며 농자재(비닐, 농약, 농기계)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농산물 가격과 유통체계 및 정책의 완비 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수리시설과 관련하여 가뭄과 홍수 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수리건설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문서 조항의 내용은 중국 정부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부문의 발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 정부는 농업발

전을 통해서만이 전체 13억 인구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비로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점을 깨닫고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3. 중국의 외자유치제도

3.1.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결의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1979년에 최초의 투자관련법규인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그리고 1986년과 1988년에 각각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공포하였다.

특히 1992년 덩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¹⁾를 계기로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국투자와 관련된 개방조치도 한층 가속화되었다. 또한 1992년에 개최된 제14회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당의 이념으로 결의하였고, 1993년에는 헌법에 동 문언을 명시함으로써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한 점 등은 외국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신

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은 1993년 이후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변화를 기점으로 새로운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1990년대 중반부터 변화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원은 1994년 3월에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요강’을 발표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는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명의로 ‘외국기업 투자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과 ‘외국기업 투자산업지도목록’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정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외자유치정책도 지역별 우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잠정규정과 지도목록에서는 외국인 투자사업을 장려, 제한 및 금지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농업, 에너지, 통신, 주요 천연자원의 개발,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그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서부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적극 장려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내생산이 이미 포화상태이거나 단순기술업종 및 환경오염 유발업종, 그리고 우편과 통신, 방송, 영화, 희소광물자원 채굴업 등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며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에 해가되는 부문의 외자도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자유치정책의 변화는 그간 추

¹⁾ 시장경제체제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경제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고자 덩소평은 1992년 1~2월 간에 호북성 무창(현재의 무한), 광둥성 심천 및 상해를 직접 방문하여 연해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역설하는 등 개혁과 개방노선을 강조하였음.

표 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도입관련 주요 정책

연 도	주 요 정 책
1978. 12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 결의
1979. 7	광둥성의 深圳, 珠海, 汕頭, 厦門 등 4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공포
1983. 9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공포
1984. 4	연해 14개 도시의 개방 결의 및 경제기술개발구 지정
1985. 2	長江, 珠江, 閩南 삼각주지역을 연해경제개발구로 지정
1986. 4	'외자기업법' 공포
1988. 4	해남도특별행정구를 해남성으로 승격시키고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경제개방구로 지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공포
1990. 4	上海 포동(浦東)개발구 건설을 결정
1990. 12	'외자기업법실시세칙' 공포
1991. 3	27개 도시를 첨단기술산업개발구로 지정
1992. 1-2	등소평 '남순강화'(南巡講話) 실시
1992. 7	上海, 大連, 天津, 廣州, 深圳 등 5개 도시를 보세구(保稅區)로 지정
1992. 10	제14회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지향 결의
1993. 8	長江연안의 5개 도시와 내륙지역 15개 성도(省都)를 개방
1995. 6	'외국기업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 '외국기업투자산업지도목록' 공포
1995. 9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공포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진출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무관리 현지화 전략」, 1998. 11.

진되어온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무분별한 경쟁유발과 경기과열을 조장하였고 연해지역 우대정책으로 인해 지역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노동집약적 소규모 투자기업에서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데 대한 대응책이라 하겠다.

3.2. 외국인 투자유치 및 보장 관련 법령과 제도

우선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기본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생략) 회사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자본금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 등이 포함되는데², 업종이나 투자국에 관계없이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기본법규 외에도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한 권장정책, 중국 투자시 회사의 설립·등기와 관련되는 법규, 조세관련법규, 무역관련법규, 노무관련법규, 부동산관련법규, 외환 및 회계관련법규, 특허 및 상표관련법규, 환경관련법규, 중재관

² 중국의 각종 법규에는 '暫定(暫行)규정'이나 '잠정조례'가 많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개혁을 경제특구나 연해개방도시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타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경우나 지방정부의 조례와 중앙정부의 법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잠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2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및 보장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

부 문	관 련 법 규
기본법규	회사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자본금과 총투자액의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 등
권장정책	외상투자 권장 관련 국무원 규정, 외상투자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 등
신규회사 설립 및 등기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실시세칙,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조치, 중외합자대외무역회사의 설립에 관한 시범잠정조치, 외상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등
조 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 개인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 부가가치세(增値稅)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부가가치세의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소비세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영업세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자원세 잠정조례, 토지부가가치세 잠정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조세징수관리법 등
무 역	대외무역법, 외국투자기업 수입관리 실시세칙, 세관법, 수출입관세조례, 외국투자기업 조세업무 관련 문제점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등
노 무	노동법, 노동조합법, 외국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임금총액 구성 관련규정, 외국투자기업 근로자 고용자주권 및 임금보험복지비용에 관한 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기업종업원의 양로보험기금 관리규정,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등
부동산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부동산 개발관리 잠정조치,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제양도 임시조례, 외국투자기업의 성편토지 투자·개발·운영에 관한 임시관리규정
외 환	외환관리조례, 외환결제·외환매도·외환지불 관리규정,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국무원 규정 등
회 계	외국투자기업 회계제도, 외국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 감사방법 등
특허 및 상표	특허법과 동법 실시세칙, 상표법과 동법 실시세칙, 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 및 동조례 실시세칙 등
환 경	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과 동법 실시세칙, 대기오염방지법과 동법 실시세칙 등
중 재	중재법,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청 산	외국투자기업 청산조치

련법규, 그리고 기업청산관련법규가 있다.

4. 투자환경 분야별 현황

4.1. 토지제도

4.1.1. 개황

농업투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이 토지제도 관련규정이다. 농업은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토지문제가 투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중국에 농업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는 중국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중국토지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이다.

둘째, 양도와 제양도는 다르다. 전자는 국가가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사용권을 일정

기간동안 토지사용자에게 이양하고 토지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후자는 토지사용권의 사적 양도를 의미한다. 재양도의 경우 양도계약 및 등기 문서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전된다. 토지사용자가 재양도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사용기간은 원래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서 규정한 사용기간중 원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기간을 뺀 잔여기간이다. 그리고 사용권 양도시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과 기타 부속물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된다.

셋째, 토지와 건물의 주관부문이 다르고, 원칙상 건물이 중심이고 토지는 부차적이다. 정부의 토지관련기관의 업무는 토지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건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설부와 지방정부의 건설부문이 주관한다. 지상건축물이나 기타 부속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그 건축물과 부속물의 사용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가진다. 특히 사용자가 지상건축물이나 기타 부속물의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 사용범위내의 토지사용권도 함께 양도되는데 이러한 원칙은 건물이 중심이고 토지는 부차적이라는 토지소유에 관한 이념 탓이다.

넷째, 토지관리의 분권화이다. 토지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국무원 토지행정주관부문은 통일적으로 전국 토지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책임지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토지행정 주관부문의 설치 및 그 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한다. 중앙정부의 국가토지관리국은 거시적인 장기계획이나 연간계획의 수립, 법규와 제도의 제정,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등 주요 안전에 대해서만 심사인가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토지관리는 각급 지방정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각급 지방정부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4.1.2. 토지소유권

중국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구분되며 토지소유는 국유 또는 사회소유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하 토지관리법이라 칭함) 제2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인민적소유제와 노동대중집체소유제를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동법 제8조에서는 “도시구역내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지역의 토지는 법적으로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민집체소유이며 주택단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집체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토지는 국유제, 농촌토지는 집체소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3조에서는 국가소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즉 도시 시 구의 토지, 농촌과 도시 교외지구중 법에 의거 몰수, 징용, 수매 등에 의해 국유화된 토지(법에 의거 집체소유로 구분 또는 확정된 것은 제외) 및 국가가 집체소유로 확정하지 아니한 임지, 초지, 구릉, 황무지, 모래언덕 및 기타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농민

집체소유의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부에 등재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소유권을 확인한다.

4.1.3. 토지사용권

토지관리법제2조에서는 “전인민적소유 즉 국가소유토지의 사용권은 국무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국무원에서 관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에 따라 집체소유토지를 징용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조에서는 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토지를 개인이나 단위가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와 개인이 법에 의거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등기부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사용권을 확인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불가능하지만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원칙에 따라 토지사용권 변경은 가능하다.

4.1.4. 토지의 경영과 관리

농민집체소유토지는 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에서 경영 관리하며, 촌내 두 개이상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농민집체소유일 경우 촌내의 각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에서 경영 관리하며, 이미 향(진) 농민집체적 소유에 속할 경우 향(진) 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 경영 관리한다.

4.1.5. 토지사용권의 가격 결정

중국은 토지가 국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매매는 불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의 그 토지사용권만을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부동산 유통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토지사용권 가격은 토지시장의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토지관리부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주변 토지사용권의 거래 사례와 그 토지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토지관리부문이 정한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사용권의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4.1.6. 외국투자기업의 성편토지 개발경영 참정규정

1990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도입하여 토지의 일괄개발 경영에 종사시킴으로써 공용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선진기술기업과 제품수출기업을 유치하여 대외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이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여기서 성편토지 개발이란 국유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한 후 계획에 따라 토지를 종합적으로 개발 건설하고 정비하며 급수, 배수, 도로교통, 전력공급, 통신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며, 공업용지와 건설용지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여 토지사용권을 전매하고 공공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비스건설 등 건물을 건축하여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외자도입에 의한 이 사업의 항목 결정은 시(市)나 현(縣)의 인민정부가 일괄개발항목 건의서(또는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의한 다. 경지의 경우 사용하는 토지가 1,000무(畝)

: 1무는 약 200평임) 이하, 그밖의 토지는 2,000무 이하이며, 종합개발투자금액이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허가 권한내의 일괄개발항목과 그 항목의 건의서는 관할 정부에 심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지의 경우 사용하는 토지가 1,000무를 초과하고, 기타 토지는 2,000무를 초과하며, 종합개발투자금액이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허가 권한밖의 일괄개발항목과 그 항목의 건의서는 관할 정부를 통해 국가계획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신청하여 국무원이 심사·허가한다. 한편 이 경우 중국정부는 국영기업이 국유지사용권을 투자나 합작의 조건으로 외국기업과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개발구역 소재 시 또는 현 인민정부가 개발기업에 대하여 국유지사용권을 불하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토지관리법이나 행정법률에 따라 토지구획 범위, 용도, 연한, 불하대금 및 기타 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국유지사용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국유지사용권 불하에 대한 심사·허가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기업은 일괄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보고를 작성하여 개발 및 건설의 총 목표와 분기 목표, 구체적인 개발 내용과 요구 및 개발후의 토지 이용 방안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발기업은 일괄개발계획대로 시행하고 국유지사용권 불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비로소 국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4.2. 조세관련제도

4.2.1. 조세정책

농업투자환경으로 토지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세제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조세율의 경중이나 조세항목의 다과에 따라 투자의 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조세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를 폐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를 도입한 점과, 과거 외자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내국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세금우대 측면에서 볼 때, 이 새로운 세제의 시행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에게 과거보다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제개혁 이전의 중국 조세제도는 기업간 세금부담의 불공정성, 세수정책(외자기업 우대조치 포함)의 무규범성과 복잡성, 세수관리 범위와 방법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개혁의 기본 원칙은 자연히 세법의 통일, 세수부담의 공평화 및 간소화, 세수징수 권한의 분권화, 법에 근거한 세금징수 등에 두어졌다.

특히 분세(分稅)제도의 도입으로 중앙세와 지방세가 분할되어 세금 징수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각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의 종류도 더욱 명확해졌다. 예

를 들면, 중앙세에는 관세, 소비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중앙기업소득세, 철도와 금융부문의 수입 등이 포함되고, 지방세에는 영업세, 지방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토지부가가치세, 농목축업세 등이 포함되었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75%와 25%로, 증권거래세는 각각 50%씩 나누어 갖는다.

4.2.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중국은 외자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의 필요에 의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 등 세제상의 특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내 모든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제상의 특혜제도를 세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소득세에 대한 혜택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소득세의 감면이다(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발생한 제1차 년도와 제2차 년도는 소득세를 면제하며, 제3차 년도부터 제5차 년도까지는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이 설치한 선진기술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의 감면기간 만료후에도 선진기술기업일 때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근거하여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 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과 경제가 낙후한 변경 및 내륙개발지역에 설립된 기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앞 항에서 정한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후 해당기업이 신청하여

국무원의 세무주관기관에서 비준할 경우, 향후 10년간 과세대상 소득세액의 15~30%를 납부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부문에서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다(외국투자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제9조).

둘째, 재투자에 대한 세금 환급이다. 외국투자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을 해당기업에 직접 재투자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에 자본으로 투자하고 5년 이상 경영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신청에 따른 관할세무당국의 허가를 거쳐 재투자 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의 40%를 환급한다. 단 투자자가 5년이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기타 세금의 감면으로 외국투자기업이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내에서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와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하였으나 위의 소득이 그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며 과학연구, 에너지자원 탐사, 통신사업의 발전, 농림목축제품이나 중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서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허가를 거쳐 10%의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을 제공하거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중국내에서 추진하는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 경지점용세(생산성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점용하는 경작지에 대한 세금) 등을 면제한다.

한편 중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특정지역과 지구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특구 : 특구내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15% 세율로 징수하고, 구내에 기구 설치의 않았으나 그 소득의 원천이 경제특구인 외국상인의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경제특구 소재 도시의 옛 시내에 설립한 생산적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24% 세율로 하고, 기술 및 지식집약형 업종,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오랜 기업, 에너지·교통·항만 및 국가가 장려하는 기타 항목은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15% 세율로 징수한다. 경제특구내에 설치되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500만불 이상이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승인을 받아 흑자 발생 년도부터 제1차 연도는 기업소득세를 완전 면제하고 제2차 및 제3차 연도는 감면하여 50%를 징수한다. 또한 특구내

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그 특구내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세 납세대상물품에 대한 소비세는 규정대로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 그리고 특구내의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제품이거나 별도로 규정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연해개방도시 : 연해개방도시의 옛 시내지역에 설립한 생산적 외국투자기업 또는 농림어목축업과 수리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24% 세율로 징수하고, 연해개방도시의 옛 시내지역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중 기술 또는 지식집약형 업종,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오랜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15% 세율로 한다. 한편 지역내에 기구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원이 연해개방도시인 외국상인의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역내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그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면제한다³. 외국투자기업의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원자재, 부품, 포장재료 등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연해경제개발지구 : 연해지역 시와 현 관할 농촌(총 253개 시, 현, 진)에서 수출중대를 목표로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건설한 농업기술도입항목, 농산물 생산기지과 농산물기술가공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연해경제개발지구

³ 이 경우 국가에서 제한하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지식집약산업,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율을 15%로 한다.

경제기술개발지구 : 대련, 심양, 하얼빈, 장춘 등 경제기술개발지구로 지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구역내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15% 세율로 징수하고, 경제기술개발지구 소재 도시의 옛 시 지역 내에 설립한 생산적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24% 세율로 징수한다. 기술 및 지식집약형 업종,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불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오랜 기업, 에너지·교통·항만 및 기타 국가 장려 항목은 기업소득세를 15% 세율로 한다. 그리고 경제기술개발지구내에 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소득의 원천이 당해 지구인 외국인의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또한 지구내의 기업이 해당지구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의 수출제한 품목이나 별도규정 제품 외에는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중국산 부품이나 반제품을 사용하여 개발지구내에서 가공을 통해 실제로 증가된 부가가치가 20% 이상인 경우, 구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으로 간주하여 수출관세를 면제하고, 구내의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한 수입원자재, 부품, 포장재료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변경대외개방도시 : 변경대외개방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관서의 승인을 통해 기업소득세율을 24%로 한다.

고신기술(高新技術)산업 개발지구 : 대련, 심양, 장춘, 길림, 하얼빈 등 고신기술 개발지구로 지정된 5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구역내에 설립한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15%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고신기술기업 또는 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인정된 시점의 납세년도부터 기업소득세를 15%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 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혹자소득년도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기업소득세는 면제하며 3차부터 5차년도까지는 50%를 징수한다.

그리고 지구내의 외국투자기업이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와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고신기술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의 수출 제한 제품이거나 별도 규정 제품 외에는 수출관세를 면제한다.

내륙개방도시와 연강(沿江)개방도시 :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세금우대정책을 취한다.

4.3. 노동관련제도

4.3.1. 노동법의 특징

농업투자를 비롯한 각종 외국투자에는 토지와 함께 노동력이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노동제도를 수립·유지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하 노동법이라 칭함)을 통과시키

고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조정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2년의 노동조합법, 1993년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제정에 이어 중국의 노동법 체계를 한층 완비한 것이다. 이 노동법은 총 13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밀하지는 못하지만 노동관련 규정의 대체적인 방향은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노동의 금지, 연장근무시간의 제한, 연장근무 보수수준의 상향조정, 충분한 산후휴가 등 노동자의 휴식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법률자체가 선진적이라기 보다는 노동력이 과잉상태에 처해 있는 중국 특유의 노동력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중국 노동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따른 노동법제도의 정비이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아울러 법치주의 확립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특히 현행 노동법의 정착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노동관련 법체계를 완비한다는 목표하에 지속적인 법률과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제도와 현실의 괴리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에 따른 민주 자본주의 법제 도입을 추진하다 보니 노동법제도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현실간에 괴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중앙정부는 노동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실업해소 대책

의 일환으로 외자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에 있어 보다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급 정부간 통일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의 중국 노동법제는 과도기의 집행 준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법 집행의 점진적 강화이다. 중국정부는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기관과 인원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용사정이 좋아질수록 그리고 법체계가 정비될수록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4.3.2. 근로기준

노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선택권, 근로에 대한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향유할 권리, 노동쟁의 처리를 제청할 권리 및 법률이 정한 기타 노동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근로자의 근로기준을 노동법을 근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 휴식, 휴가 :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단위는 근로자에 대해 주당 적어도 1일의 휴무일은 보장해야 하며, 신정, 구정, 국제노동절, 국경일, 법률 및 법규가 정한 기타 휴가명절 등에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협상을 거쳐야 하며,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라도 1일 3시간, 월3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임금 : 중국도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구체적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단위는 그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사항, 즉 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법정휴가일 근무에 대해서는 각각 정상임금의 150%, 200% 및 30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 안전 위생 : 고용단위는 반드시 노동 안전위생제도를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국가가 규정하는 노동안전위생 조건을 갖추고 직업위험이 있는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특정작업 종사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 및 미성년 근로자의 특별보호 :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광산의 갱하(坑下)작업이나 국가가 정한 제4급 체력노동 강도의 노동과 기타 종사 금지된 노동을 시킬 수 없다. 또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기간 동안과 임신중에는 해당 노동배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에 배치할 수 없다. 그리고 출산휴가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근로자란 만 16세에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광산의 갱하작업, 유동성작업, 국가가 정한 제4급 체력노동 강도의 노동과 기타 금지된 노동을 시킬 수 없다.

직업훈련 : 중국 정부는 근로자의 직업기능 개발, 자질 향상 및 작업능력 증강을 목적으로 모든 고용단위로 하여금 직업훈련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규정에 의거 직업훈련경비를 적립 사용하며 계획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3. 고용제도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가 모든 노동력을 통일적으로 분배·관리하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존재나 노동력 이동의 자유란 없었으므로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기업의 자주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개혁·개방이 시작된 직후인 1980년에 심천 경제특구의 한 외자기업이 이것을 최초로 도입하였고 이후 전국으로 보급되어 1986년 노동입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계약제는 신규채용자에게만 적용되어 기존의 고정직과 계약직이 병존하는 이중고용제도의 형태를 탄생시켰다. 1995년 노동법이 발효되면서부터 기존의 고정직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에 대해 노동계약제 체결을 의무화하였으나 여전히 기존의 고정직에 대해서는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 제 20조에는 “노동계약의 기한은 고정된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일정한 작업을 완성하는 때를 기한으로 하는 것 등으로 구분되며,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단위에서 만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당사자 쌍방이 노동계약 체결을 제의하면 반드시 고정된 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직 종업원의 존재는 외자기업에게 해고권 문제와 관련되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중국은 공공기관 및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실업억제와

취업확대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경우 외자기업으로서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불량한 종업원의 정리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4.3.4. 임금제도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은 임금관리의 자주권이 없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권한이 확대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임금구성이 변동급, 성과급 및 능률급 위주로 변화하고 임금결정방식도 업종별, 지역별 및 기업별로 다양화되었으며 임금격차도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비록 ‘대과반’(大鍋飯 : 한술밥이란 말로 평등한 처지를 의미) 전통에 따른 평등주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자기업이 성과급이나 능률급을 강조하여 종업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화 할 경우 여전히 종업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거나 종업원들간의 불화를 조장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은 효율을 중시하는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제도상의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 및 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해 온 중국에서는 아직도 기업이 과중한 종업원의 복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외자기업의 경우, 자본주의국가라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부 사회복지비용을 중국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4.3.5. 노사관계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노사관계라는 개념

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기업에 자본주의 경영방식이 도입되므로 인해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노동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계층이 구분되고 이해관계가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노사관계가 확립되고 난 이후 쌍방간에는 자기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분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자 급기야 중국정부는 노동법을 제정하여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제 10장)을 명시하였다.

4.3.6. 외국투자기업의 노무관리

중국정부는 1994년 외국투자기업의 노동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중국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중외주식제기업 및 그 종업원의 노동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 규정 제 5조에 의하면 “기업은 국가의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 종업원의 채용에 관한 시간, 조건, 방식 및 수량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외자기업의 고용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4.4. 외환관리제도

4.4.1. 외환 관리 기구

외국투자시 정당한 사업자금이라 할지라도 현지의 관리규정을 어기면 범법행위로 규정되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외환관리제도를 명백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주요 외환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는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 PBOC), 국가의

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 : SAEC), 중국은행(Bank of China : BOC) 등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중국의 외환보유량과 환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각 성(省), 주요 도시, 자치구 및 경제특구에 지방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며, 주요 역할은 외환관리에 대한 정책과 법률 입안, 국가의 외환수지 계획 수립 및 집행, 국가보유분의 외환준비금에 대한 관리감독, 무역거래외환의 관리, 인민폐의 환율조정 발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구의 외환관리 등이다. 중국의 「외환관리잠정조례」 제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전문은행은 중국은행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허가없이 다른 어떤 금융기관도 외환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외환관리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외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국내 기타 금융기구가 취급하고 있는 외환업무 외에 국가의 외환준비고 관리와 외환자금 대출창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내의 모든 국내외 기구 및 개인은 별도의 법률, 법령 및 조례상의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의 매각과 매입은 반드시 중국은행을 통해서 행하도록 되어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중국투자은행,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실업은행, 교통은행 등이 외환관리국에 외환업무취급허가증을 인가 받아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4.4.2. 외자기업의 외환 관리

중국내에서의 외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의한다⁴. 따라서 국내 기구⁵, 주중 기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외환수지나 경영활동은 모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동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주중 기구와 재중외국인이 인민폐로 수취한 합법적 수입을 국외로 송금하고자 할 경우 관련 증명자료와 증빙을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기구의 자본계정 외환수입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외화구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할 경우에는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외환결제, 외환매도 및 외환지불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상계정에서의 인민폐 태환을 위하여 1996년 6월 20일 “외환결제, 외환매도 및 외환지불 관리 잠정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수입은 외환국이 제정한 최고금액 한도 내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매도하거나 외환조절센터를 통해 매도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동 규정 제 32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결제, 외

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는 1996년 1월 29일 중국 국무원령 제 193호로 공포되었으며, 1997년 1월 14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⁵ 중국내 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있는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부대 등을 말하는데, 외국투자기업도 이에 속한다.

환매도 및 외환지불을 할 수 있고 또한 외환 조절센터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5. 청산(清算)제도

외국투자기업이 경영여건의 악화 등 사유로 계속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 중국에서 철수하여야 하는 경우,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유관기관의 관료, 합작파트너, 거래처 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원만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의 순조로운 청산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 청산조치”를 공포하였다⁶. 이 조치내용에 의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청산시 이행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4.5.1. 청산 방법

보통청산 :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청산방법을 말한다.

특별청산 :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규정에 따라 청산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이사회나 공동관리위원회 등 의결기구(기업의결기구), 투자자 혹은 채권자는 기업심사비준기관에 특별청산을 신청한다.

4.5.2. 청산관련 주요 내용

가. 보통청산

청산기한 : 기업청산기한은 청산개시일로부터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청산보고서를 회부한 날까지이며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청산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청산위원회가 기한 만료 15일전에 기업심사비준기관에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청산기구(청산위원회) : 청산위원회는 청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성하며 인원은 최소 3명이고(기업의결기구의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거나 관련 전문요원을 초빙) 주임 1인을 둔다. 이 위원회의 직권은 기업 재산의 정리, 재산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안 작성, 확인된 채권자에 대한 서면통지, 미확인 채권자를 위한 공고, 청산관련 기업현안 업무처리, 재산평가 및 계산근거 제출, 채납세금 청산, 기업채무 상환후 잉여재산 처분, 기업대표자격으로 민사소송 활동 참가 등이다.

통지와 공고 : 기업은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청산원인, 청산개시일자 등을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에 국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행정주관부문에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채권청구를 하게 하고, 성립일로부터 60일내에 최소 2회 전국일간지 1종과 현지 성급 혹은 시급 신문 1종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 1차 공고문은 청산위원회 성립일로부터 10일

⁶ 이 조치는 1996년 6월 15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동년 7월 9일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포하였다.

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채권·채무와 변제 : 위원회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을 등록하고 사정·확인후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산의 종지(終止) : 청산위원회는 규정작업 완료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기구의 확인을 받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등록한다.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등록말소수속을 완료하고 다시 10일 이내에 청산보고서, 등록말소증명서류를 기업등록기관에 제출하여 기업등록말소수속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고, 동시에 전국일간지 1종과 당지 성급 혹은 시급신문 1종에 기업종지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나. 특별청산

기업이 특별청산을 할 경우 기업심사비준기관 또는 수임기관은 중외투자자, 관련기관 대표 및 관련전문요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주임 1인을 둔다. 특별청산기간에는 그 주임이 기업의 법정대표 직권을 행사하고 청산위원회가 기업권력기구의 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청산위원회는 청산관련업무를 처리하고 그 활동을 기업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한다.

5. 투자관련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유의사항

5.1. 외자유치정책 및 제도 전반에 관련된 사항

중국의 법규는 중앙에는 중앙정부법규, 지방에는 지방정부법규가 있어 매우 복잡한 양

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외국투자기업은 반드시 중앙과 해당지방의 관련 법규를 동시에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중앙과 각 지방의 각종 법규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자기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정부의 정책 및 법·제도상의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과 유의사항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외자기업을 관할하는 관련 부서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서에서 각기 따로 행정지도를 행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의 중복과 한가지 사안을 여러 기관에 중복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정책의 일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의 행정명령 공문에는 보통 「특별법 우선 적용」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 중국관리들은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에는 모든 행정적 문제들에 대해 원만하게 의논하여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투자가 시작된 이후에는 당초의 우대조치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거나 내용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기업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제의 정비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예를 들면 기존의 미비한 법규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새로이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환경규제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정책집행으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는데, 외자기업에게는 내국

법인 및 정부기업에 비해 각종 부담금이 과다 부과되기도 한다.

게다가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정책 변경 등에 관한 정보의 공지가 잘 안되며, 새로운 규정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새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를 시행하여 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경된 규정이나 법규가 문건 하나로 통지될 뿐 세부시행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어렵고, 개정법률의 적용에 있어 확실한 유권해석 부족으로 외자기업이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행정간섭 배제를 위한 합자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외국기업이 중국측으로부터 구두승낙을 받을 경우, 승낙한 사람이 정부관리라 하더라도 서면계약이 필요하다. 정부관리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의 구두계약은 아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문서화된 계약만이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5.2. 토지 관련 사항

중국의 토지 관련 법규에는 내국인, 외국인, 그리고 내외국인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복잡한 토지법제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으로서 는 외국인과 내외국인 대상 법규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측 파트너가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관한 법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의 60%를

지방정부가 가지므로 중국투자시 토지 관련 사항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상투자 장려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수출위주이거나 선진기술을 제공하는 생산적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데 토지사용료 책정시에도 적용된다. 즉 동일 지역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사업의 종류나 생산 제품의 수출비중에 따라 토지사용료가 차별화된다. 그리고 토지사용권 매입시 해당 토지의 현 사용자 또는 사용권자가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방정부의 토지관련 부문에 확인해야 한다.

투자액이 비교적 적고 단기에 자금회수를 계획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토지나 건물의 임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차방식에 의한 토지 사용은 장기적인 토지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투자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토지사용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임차방식을 택할 경우 임대차계약시 일정기간마다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주변 지가의 상승 등 요인으로 토지사용료의 상승폭이 예상외로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합자나 합작시 중국측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가치평가에 유의해야 한다⁷. 중국은 아직

⁷ 실제 합자나 합작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측 파트너는 대부분 토지사용권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거하여 토지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자기업으로서는 그 지역의 선발 외자기업의 사례 정보를 입수하여 가격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사용료의 결정에 있어 중국측 동업자가 지방정부에 지불한 양도료를 기준으로 하고, 주변 토지사용권의 거래시세와 해당 토지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농업투자와 관련하여 농촌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회수하여 국유지화 한 다음 이를 불하받거나 합자 또는 합작을 통해 중국측 동업자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야 하는데,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출자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농업투자의 일환으로 농지를 직접 조성(개발)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가격 결정 메카니즘과 기본시설(infrastructure) 구비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비용에는 토지사용료에 거주자의 퇴거, 보상금, 조성비용 및 각종 기본시설의 개발비 등이 포함되므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체결시 토지비용에 기본시설관련 비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토지사용권을 양도받은 후에도 관련기관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한 경우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3. 조세 관련 사항

1994년 단행한 세제개혁의 결과는 외국투

자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새로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외자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원가상승 부담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신설은 중국정부가 외자기업들에게 내수판매를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내수판매(위탁대리수출도 내수판매로 분류)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적용에 있어 199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이전에 설립된 기업과 이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 차등 적용함으로써 과세 형평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⁸.

또한 중국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시행해오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⁹를 수정하여 1996년부터는 부가세 환급율을 종전의 14%에서 9%로 하락시켰으며, 이로써 당초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수출에 주력해오던 외국투자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부 외자기업은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다시 소급해서 과세하는가 하면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몇년치를 소급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외국투자기업이 받는

⁸ 1994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그 이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만 원자재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환급해 주고, 그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수출을 제외하고는 부가세를 징수하며 중국산 원자재를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도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⁹ 외국투자기업들로 하여금 내수보다 수출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표 3 부가가치세의 이원적 적용

	9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자기업	9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외자기업
수출되는 재화	○ 부가세 면제(단, 원유 및 수출금지품목 제외) ○ 원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원가에 합산처리해야 함.	○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 ○ 직접 수출하는 제품은 0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원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내수판매 재화	○ 부가세 징수 ○ 중국 수출기업에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대리수출하는 경우도 내수판매로 간주	○ 부가세 징수 ○ 단, 내수판매 매출세액에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환급 및 청산	○ 부가세 환급 불가	○ 수출거래 회계처리 완료후 세무기관에 수출화물관세 환급신청 가능

자료: 대한상공회의소(1998), pp. 363. “사례를 통해 본 대중국 투자 및 기업경영 전략”.

조세상의 불이익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고 관공서 신고를 요하는 사안이 번잡하여 외자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준조세는 내국기업은 제외한 외자기업에게만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은 과세 조치다.

5.4. 노무 관련 사항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은 외국기업의 중국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임금 요인은 노동의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실제 큰 장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노무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다음은 노무제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이다.

첫째, 현지정부의 인력채용(특히 타지인 채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들 수 있는데, 중국정부는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시행함으로써 다방면에서 기업의 노무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초과근무), 임금, 휴가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종업원

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고용주인 외자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

둘째, 노동관계법이 매우 복잡하고 징수하는 노무관리비가 여러 종류이며 일괄적인 청구 개설이 안되어 있어 외자기업의 혼선을 유발한다.

셋째, 인력채용과 관련하여 높은 부담금을 감수하여야 한다. 즉 각종 보험부담금, 보조금, 잡부금, 징수금, 외자기업종합기금, 임시공관리비용, 실업보험비 등 현 임금체계상 회사가 부담하는 노무간접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넷째, 전반적 외자기업의 임금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종업원의 자질은 대체로 낮은 편이어서 당초 중국투자 결정요인이었던 저임금의 장점이 어느 정도 반감된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곤란을 잘 극복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데, 다방면에서의 유의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 나라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은 주로 양국의 노동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국 현지에 파견 근무하는 우리 나라 기업의

관리자들은 대부분 중국권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어 중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관습, 노동문화 및 노무관리 방식 등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상 노사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 나라 기업은 현지에 파견할 관리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언어교육 포함)을 실시한 후 현지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지에 파견된 우리 나라 관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은 현지의 노동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현지근로자들의 노무관리시 활용하는데, 일시에 우리식 노무관리 방식을 적용하려 들지 말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인은 중화사상의 영향으로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문화적 수준도 높은 편으로 선진국가를 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에 파견된 우리 기업의 관리자들은 중국인을 후진국의 무지한 국민정도로 인식하여 무시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한 노사갈등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또한 중국근로자들의 관리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사회주의 관리체제에 익숙해 있는 중국근로자들은 규정외적인 업무는 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노무관리상 필요한 모든 지침은 규정화하고 실질적인 업무지시는 문서화된 규정에 의해서만 한다.

이밖에도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이 방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 중국은 예로

부터 가정이건 직장이건 여성의 권한이 강한 편인데, 특히 노동관련법규에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 관련조항이 많은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투자자는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5.5. 기업환경 관련 사항

중국의 경제제도는 아직도 완비되지 않은 부문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에서는 반드시 되는 것도 없고 절대 안 되는 것도 없다”, “중국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는 어쩌면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편법과 탈법이다. 이러한 편법과 탈법은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 훌륭한 인간관계로써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어긋나면 모든 것이 한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윤추구가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중국으로서는 외국투자자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득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 및 지역사회발전의 공헌을 중시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중국은 국토가 광범위하여 각종 다양한 자원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재료는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표준화된 양질의 원부자재 조달이 보장되어야 하는 외자기업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때로는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투자지역 선정시 현지의 원부자재 생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원부자재의 지속적인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이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대체로 생산을 위한 기초시설이 미비되어 있다. 특히 농업투자 가능 지역으로 고려되는 곳들 대부분이 황무지로 인근 지역에 기존의 기초시설이 미비된 실정이다. 즉 전력 부족, 철로·도로 등 교통망 부족, 운송수단 낙후 등으로 개발시 많은 부대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경우 현지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거나 개발후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아직 유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 생산후 제품의 내수 비중이 높을수록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5.6. 기업청산 관련 사항

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불확실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 나라보다 기업경영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중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요소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합작계약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폐업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투자여건이 돌변하여 당

초의 투자목적 달성을 수 없을 때에 합자기업은 어느 한편이 영업중지를 요구할 경우 다른 한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합자기업이 문을 닫을 경우 어떻게 한다는 처리방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영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철수하는 경우, 부당한 경제적 손실이나 행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외국투자기업 청산조치”의 규정에 의거 청산수속을 해야 한다.

6.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는 국내에서의 발전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자들은 투자시작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마련이다. 해외투자는 국내에서 누릴 수 없는 좋은 기회들을 향유할 수도 있으나 위험 또한 그만큼 크다. 따라서 해외투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있어야하며 특히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투자환경 조사가 필수적이다.

농업투자환경에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성패의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법률과 제도 요소라 하겠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양호하다 하더라도 외국투자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 일단 성공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식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그 역사도 오래지 않아 사회 전반적인 체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농업투자는 특히 법률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업투자관련 중국의 각 부문별 법률과 제도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투자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본다.

먼저 농업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토지이다. 중국의 토지정책은 농촌문제와 경지보전, 국유기업 개혁과 국유자산 보전문제, 도시지역 주거문제 등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기업으로서의 사전에 이러한 중국의 실정과 중국정부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또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투자시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중 농업투자시 우리 투자자가 필히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국 토지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로 소유는 국유 또는 집단소유이며 소유권 변동은 불가능하다. 단 사용권의 변경은 가능한데, 토지사용권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토지와 지상 건조물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재양도의 구분으로 양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토지사용자에게 이양하고 토지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이며, 재양도는 토지사용권의 사적 양도를 의미한다. 재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계약 및 등기 문서중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전된다. 이때 토지 사용 기간은 원래의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서 규정한 사용기간에서 원 토지사

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다. 그리고 사용권이 양도될 당시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 기타의 부속물의 소유권은 같이 이전된다. 셋째, 토지와 건물의 관계로, 정부의 토지관련 기관의 업무는 토지에만 국한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설부와 지방정부의 건설부문이 주관하고 있다. 지상 건축물과 기타 부속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당해 건축물과 부속물의 사용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갖는다. 사용자가 지상 건축물, 기타 부속물의 소유권을 재양도하는 경우 그 사용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은 이에 동반하여 양도된다. 이러한 원칙은 건물이 주로 토지가 딸라는 토지소유에 관한 재래의 이념이 잔존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토지관리의 분권화이다. 중앙의 국가토지관리국은 거시적인 장기계획, 연간계획의 수립, 법규 및 제도의 제정,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등 주요 안전에 대해서만 심사인가권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토지관리는 각급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따라서 각급 지방정부에 의한 독자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가능하게 하며 그 속에 지방정부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중국은 세계개혁을 단행하여 1994년부터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를 도입하였다는 것과 과거 외자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내국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으로서의 세금우대면에서 이전보다 불리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특정지역 및 지구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 임업, 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과 경제가 낙후한 변경 및 내륙 개발지역에 설립된 기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한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국무원의 세무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아 이후 10년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 장려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정부의 외자유치정책에 따라 세율의 고저가 결정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그 기본적인 동기가 주로 저렴한 노동력의 활용에 있으므로 중국투자에 있어서는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우리 나라와 중국간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노동관습, 노동문화 및 노무관리 방식의 차이, 중국과견관리자들의 현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능력 미비, 일방적인 우리 식 노사관계를 정립하려는 자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사간 갈등이 표출되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노사분규로 이어져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중국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취욕 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충성심도 결핍되어 있어 기업경영상 경쟁력이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취의욕 고취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교육(정신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인

의식, 소속감 및 애사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노사간 유대강화야말로 중국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여진다.

1995년에 비로소 중국 최초의 노동법이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노동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조항이 많으며 판례법이나 선례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외자기업을 관리·감독하는 당국은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불합리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의 불투명성과 임의성은 외자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경영 예측을 제약하고 예기치 못한 비용증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종 간담회, 세미나 및 회의 등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에 참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의 외환관리제도를 살펴보면, 중국내에 있는 모든 국내외 기구 및 개인은 별도의 법률, 법령 및 조례상의 규정이 없는 한 외환의 매각과 매입은 반드시 중국은행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외환수입은 외환국이 제정한 최고금액 한도 내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이나 외환조절센터를 통해 매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결제, 외환매도 및 외환지불을 할 수 있으며 외환조절센터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경영여건의 돌변 등 부득

이한 사정에 의하여 기업경영을 중단하고 청산하고자 할 경우 기업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다음 투자기회를 위해서 그 기업이 그때까지 쌓아 온 중국의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 유관기관의 관료, 합작파트너, 거래처 관계자 등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 원만한 마무리를 해두어야 한다.

끝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법률과 제도상의 투자환경 관련 현황,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규는 중앙정부에 중앙법규, 지방정부에 지방법규가 있으므로 투자 고려시에는 반드시 중앙과 해당지방의 관련 법규를 동시에 명백히 이해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규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외국기업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외상투자방향지도에 관한 잠정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 개방지구 환경관리 잠정실시 조치법』 등이 있다. 이밖에도 대외경제 기술합작법규, 외환관리에 관한 법규, 세관에 관한 법규, 환경보호, 상품검사, 중재 등에 관한 법규와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관련 법규도 매우 중요하므로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행정체계 운영방식을 잘 터득하여 행정업무 처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 이후의 관련 정책변동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중국의

행정명령 공문에는 보통 「특별법 우선 적용」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중국관리들은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에는 모든 행정적 문제들이 잘 의논되어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투자가 시작된 이후에는 당초의 우대조치가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거나 내용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기업은 이러한 중국정책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려는 초기단계에서는 세금면제나 감면 등의 세무특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될지 모르나 영구적인 특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기에 절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시장에 직접 투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중국진출이 한국본사의 글로벌 경영전략의 틀 및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중국투자 방침이 확정된 경우에도 투자대상지역 및 합자·합작파트너를 선정함에 있어 현지 상관습, 사회간접자본, 현지 지방정부의 적극성과 합리성, 내수시장 진입 허용 요건, 관련산업의 발달 정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대중투자의 역사가 짧아 타 외국기업보다 경험이 부족한 편이므로 타 외자기업의 사례와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계적인 현지화를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 중국문화, 상관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지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기업경영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관

계기관의 관료는 물론 현지 주민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며 기업경영으로 인해 모두에게 이익이 분배된다는 관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윤추구가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중국으로서는 외국투자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중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득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 및 지역사회발전에의 공헌을 중시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 김화섭. 1997. 8. 「중국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연구원.
- 김윤환 외. 1992. 11. 「전환기의 중국경제」.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집.
- 대한상공회의소. 1998. 4. 「사례를 통해 본 대중국투자 및 기업경영 전략」.
- 대한상공회의소. 1998. 11. 「중국진출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무관리 현지화 전략」.
- 대한상공회의소. 1998. 9.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조세제도 해설」.
- 대한상공회의소. 1998. 8. 「중국 가공무역 통관 관련법규 문답집」.
- 대한상공회의소. 1998. 6.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실태와 애로요인」.
- 대한상공회의소. 1998. 4. 「사례를 통해 본 대중국투자 및 기업경영 전략」.
- 대한상공회의소. 1997. 11. 「중화경제권시대의 개막과 우리기업의 대응」.
- 대한상공회의소. 1997. 3. 「중국진출기업의 경영실태와 투자성과분석」.
- 신태용, 김화섭. 1996. 2. 「중국의 산업정책 전개와 한·중산업협력 방향」. 산업연구원.
- 이학규, 최봉현, 고정식. 1995. 11. 「제도적 측면에서 본 중국의 기업환경분석」, 산업연구원.
- 조현준. 1997. 12. 「중국내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채희준. 1991. 2. 「중국의 경제개혁 현황과 그 한계」. 극동문제연구소.
- 최봉현, 조영삼. 1993. 7. 「중국 동북3성의 경제와 투자환경」, 산업연구원.
- 최수웅. 1992. 12.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 외자기업의 토지사용제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 한국무역협회. 1994. 8. 「대중국 교역 및 투자안내」.
- 江占民, 仲崇敬. 1998. 8. 「農業經濟與管理」. 中國農業出版社.
- 吉林省人大農村經濟委員會. 1995. 5. 「農業法律法規匯編」.
- 盧文. 1997. 2. 「向二十一世紀前進的中國農村」, 中國農村土地制度國際研討論文集, 中國農業出版社.
- 盧文, 裴長洪, 魏唯. 1997. 3. 「中國農村：開放與發展」, 中國農業出版社.
- 農業部軟科學委員會. 1998. 6. 「中國農業和農村經濟規律性問題研究」, 中國農業出版社.
- 杜鰲, 袁崇法. 1994. 「中國農村改革與發展：回顧和展望」, 華夏出版社.
- 厲无畏 等. 1998. 8. 「轉型中的中國經濟」, 上海人民出版社.
- 文化林, 陳綿水. 1998. 5. 「涉外經濟合同的簽訂與中英文范本」, 江西人民出版社.
- 牛若峰. 1996. 12. 「中國農業的變革與發展」, 中國統計出版社.
- 李治民. 1998. 1. 「中國農業產業化經營：理論·實證·操作」, 企業管理出版社.
- 國家統計局. 1998. 8. 「成就輝煌的20年」, 中國統計出版社.
- 中國農地制度課題組. 1993. 11. 「中國農村土地制度的變革」, 中國農村土地制度國際研討論文集 北京大學出版社.

- 沈陽市對外經濟貿易委員會, 1997. 1. 「外商投資企業法律法規選編」.
- 遼寧省對外貿易經濟合作廳, 1998. 10. 「利用外資法規文件匯編」.
- Longworth, J.W. and Brown, C.G. (1995) Agribusiness Reforms in China.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 Yao, S. (1994) Agricultural Reforms and Grain Production in China. St. Martin's Press.
- Minami, R. (1994)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The Macmillan Press LTD.